**붙임** 학습교재 최종 수정내역

# 우편일반

## 【 제2편 우편물류 】

### □ 15페이지 (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, 4. 발송작업)

○ 다. 국명표의 사용 1)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1) 개념<br>우편용기의 도착/발송국번호, 용기종류, 서비스종류, 우편물형태 등 해당 운반차 (운반대) 나 운송용기 등의 운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표지 | 1) 국명표의 정의<br>우편용기의 도착/발송국번호, 용기종류, 서비스종류, 우편물형태 등 해당 운반차 (운반대) 나 운송용기 등의 운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표지 |

### □ 40페이지 (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4. 우편물의 배달)

○ 바. 고층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 6) 나) 【예시】의 내용 중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2. 우편물 수취방법<br>가.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취하여도 무방함<br>나. 주민등록증 지참 | 2. 우편물 수취방법<br>가.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취하여도 무방함<br>나. 신분증 지참 |

## □ 43페이지 (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5. 등기취급(부가취급·특수취급) 우편물의 배달)

○ 마. 보험취급 우편물의 배달 4) 가) (3)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(3) 배달할 때에는 안심소포의 포장 상태, 파손, 무게 상이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배달한다. | (3) 배달할 때에는 안심소포의 포장 상태, 파손, 무게 상이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 처리한다. |

## □ 44페이지 (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5. 등기취급(부가취급·특수취급) 우편물의 배달)

○ 바. 증명취급 우편물의 배달 2)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2) 배달증명우편물의 배달 | 2) 배달증명우편물(배달증명서)의 배달 |

## □ 44페이지 (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5. 등기취급(부가취급·특수취급) 우편물의 배달)

○ 바. 증명취급 우편물의 배달 2) 나)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(1) 배달증명서는 배달증명우편물 발송인 주소지 관할 집배국에서 출력하며 출력기준일은 배달 완료 등록 후 D+2일 이다.<br>(2) 배달증명서는 우편물 발송 시 발급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 후라도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편물 배달 시 배달결과(수령인명 · 관계 등)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. | (1) 배달증명서는 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발송인 주소지 관할 집배국에서 출력하며 출력기준일은 그 우편물의 배달 완료 등록 후 D+2일 이다.<br>(2) 배달증명서는 우편물 발송 시 발급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 후라도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. |

# 【 제3편 국제우편 】

## □ 13페이지 〔제1장 국제우편 총설 3-1 개요〕

○ 다. 국제소포우편물

| 현행 | 변경 |
| --- | --- |
| 라. K-Packet: 2kg 이하 소형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우편서비스<br>1) 계약고객 전용 서비스<br>2) 주소 등 발송(접수)관련 정보는 계약고객전용 정보시스템(API)시스템을 통해 입력<br>3) 다량 이용자에 따른 요금감액 혜택 제공 | 1라. K-Packet: 2kg 이하 소형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서비스<br>1) 계약고객 전용 서비스<br>2) 주소 등 발송(접수)관련 정보는 계약고객전용 정보시스템(API)을 통해 입력<br>3) 다량 이용자에 따른 요금감액 혜택 제공 |

# 예금일반

## 【 제1편 금융 개론 】

### □ 33페이지 (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1-6. 금융유관기관)

ㅇ 1-6-3. 예금보험공사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특히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·지점의 예금은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농·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, 운영하는 「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」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.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과 '새마을금고법'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.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.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. | 특히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·지점의 예금은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농·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, 운영하는 「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」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.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과 '새마을금고법'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.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.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. |

### □ 41페이지 (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2-1. 저축상품)

ㅇ 2-1-4. 특수목적부 상품 ① 주택청약종합저축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최대 연 300만 원 의 40%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. |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최대 연 300만 원 의 40%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. |

□ 87페이지 (제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4-4. 주식과 채권의 비교)

ㅇ 4-4. 주식과 채권의 비교

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|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배당소득의 30%를 입금불산입하기 때문에 |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배당소득의 30%를 익금불산입하기 때문에 |

# 【 제2편 우체국금융 제도 】

□ 120페이지 (제5장 예금업무 개론 3-1 예금의 입금업무)

ㅇ 3-1-3. 계좌송금

**현행**

<표5-2>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신청 대상 | ·'21. 7.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<br>·'23. 12.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|
| 대상 조건 |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반환된 경우 (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'반환거절' 또는 일부반환' 종결)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|
| 신청 가능 기간 |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(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) |
| 반환 지원 신청 절차 |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<br>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|

**변경**

<표5-2>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신청 대상 | ·'21. 7.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<br>·'23. 12.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<br>·'25년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|
| 대상 조건 |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반환된 경우 (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'반환거절' 또는 일부반환' 종결)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|
| 신청 가능 기간 |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(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) |
| 반환 지원 신청 절차 |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<br>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|

# 【 제3편 우체국금융 상품 】

## □ 190페이지 (제8장 우체국금융 상품)

ㅇ 1-1. 수시입출식 예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)

**현행**

18) 우체국 매일 이자 파킹통장

- 목돈 여유자금 매일 잔액 1천만원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정기 이자 지급일 외 고객이 이자 지급 요청 시 이자를 제공하는 통장
- 이 예금은 상품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매일 잔액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최고 연 2.0%,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0.55%를 제공
- 이 예금의 상품 우대이율은 매일의 잔액에 대해 다음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.4%p를 제공

(연 %p)

| 우대조건 | 우대이율 |
|---|---|
| 이 예금 가입일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하는 고객인 경우 (1년간 적용) | 0.4 |
| 정기이자 결산기간 중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| 0.2 |
| 정기이자 결산일에 이 예금 고객이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(1년간 적용) | 0.2 |
| 정기이자 결산일에 이 예금 고객이 통합멤버십(잇다머니)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| 0.2 |
| 우체국공익재단 협약기관(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)에 기부신청 및 기부금(1천원~1백만원)이 1회 이체된 경우(1년간 적용) | 0.2 |

**삭제**

해당 내용 삭제

우체국 매일이자 파킹통장은 판매한도가 (10만좌) 있는 상품이며 판매한도 달성에 따른 판매중지('25.11.25.)